약관 개정 대비표

■ 약관명: 「기부이체 서비스」이용약관
■ 변경 시행일: 2026년 12월 9일 (수)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적용
■ 주요 변경 내용: 기부가능 상품 및 기부처 확대

<신구 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조 <생략> **제2조 (약관의 적용)** 기부이체 서비스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자동계좌이체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신설>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부이체 서비스"란 "은행"이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적금상품의 만기이자 또는 원리금으로 "기부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종교기관, <신설> 중 "납부자"가 희망하는 종교기관, <신설> 에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기부금 서비스"란 "은행"에 서면으로 기부금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득한 종교기관, <신설>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1조** <좌동> **제2조(약관의 적용)** 기부이체 서비스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자동계좌이체 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거치식예금 약관』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기부이체 서비스"란 "은행"이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예적금상품의 만기이자 또는 원리금으로 "기부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종교기관, 학교 중 "납부자"가 희망하는 종교기관, 학교에 이체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기부금 서비스"란 "은행"에 서면으로 기부금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낙을 득한 종교기관, 학교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납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납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부가능 상품확대 기부가능 상품 및 기부처 확대

3. <생략> 4. "기부처"란 은행의 "기부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종교기관, <신설> 중 "납부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종교기관, <신설>을 의미합니다.	3. <좌동> 4. "기부처"란 은행의 "기부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종교기관, 학교 중 "납부자"가 기부하고자 하는 종교기관, 학교를 의미합니다.	
제4조 <생략>	**제4조** <좌동>	
제5조 (기부이체 서비스 이용가능 예금) ① 기부이체 서비스 등록 가능 계좌는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기적금 상품 중 은행이 정한 상품(이하 "대상 상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생략>	**제5조 (기부이체 서비스 이용가능 예금)** ① 기부이체 서비스 등록 가능 계좌는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예적금 상품 중 은행이 정한 상품(이하 "대상 상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좌동>	기부가능 상품확대
제6조 (기부이체 서비스 내용 및 요건) ① <생략> ② 기부이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이체 처리됩니다. 1. 적금의 만기해지 2. 적금의 만기 후 해지	**제6조 (기부이체 서비스 내용 및 요건)** ① <좌동> ② 기부이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이체 처리됩니다. 1. 예적금의 만기해지 2. 예적금의 만기 후 해지	기부가능 상품확대
제7조~제14조 <생략>	**제7조~제14조** <좌동>	
<생략>	<좌동>	
부 칙	부 칙	
<생략> <신설>	<좌동> 이 약관은 2026년 12월 9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추가